「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모임」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 서

2021. 11.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제 출 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회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목 차

제1장 총설	5
제1절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6
제3절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진 구성 및 추진일정	7
제2장 조례 규정의 분석기준	8
제3장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분석	11
제1절 의회	11
제2절 기획예산	39
제3절 총무	103
제4절 문화홍보	139
제5절 평생교육	147
제6절 세무	149
제7절 복지정책	154
제8절 사회복지	164
제9절 위생	175
제10절 경제	179
제11절 환경청소	204
제12절 도시재생	222
제13절 건설안전	228
제14절 교통	243
제15절 보건	255
제16절 기타	256
■ 조례 목록별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260
■ 참고 문헌	270

■ 자치법규(조례) 분석자료 목록

연번	절구분	절번호	조 례 명	쪽수
1		1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2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16
3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17
4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19
5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21
6	제1절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5
7	의회	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7
8		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9
9		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
10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5
11		1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36
12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39
13		2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40
14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46
15		4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48
16		5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0
17		6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53
18		7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61
19	제2절	8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62
20	기획예산	9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64
21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66
22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73
23		1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4
24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8
25		14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81
26		1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87
27		16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89

28		17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0
29		18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92
30		19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97
31		1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103
32		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108
33		3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13
34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114
35	제3절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0
36	총무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127
37		7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130
38		8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131
39		9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132
40		10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134
41		11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135
42		1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	139
43	제4절	2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39
44	문화홍보	3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1
45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143
46	제5절 평생교육	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47
47	제6절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149
48	세무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153
49		1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4
50	제7절	2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57
51	복지정책	3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59
52		4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0
53		1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64
54	제8절	2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65
55	세8설 사회복지	3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168
56		4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169

57		5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171
58	제9절	1	안 조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75
59] 세 <i>9</i> 결 위생	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177
60		1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179
61		2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82
62		3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186
63	제10절 경제	4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88
64		5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96
65		6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안)	200
66		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04
67	제11절	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08
68	환경청소	3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10
69		4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213
70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218
71	제12절	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2
72	도시재생	2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26
73		1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8
74		2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31
75] 제13절	3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32
76	건설안전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9
77		5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안)	240
78		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43
79		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46
80	제14절 교통	3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248
81		4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50
82		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52
83	제15절 보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255
84	제16절 기타	1	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시안)	256

제1장 총 설

제1절 연구 목적

- o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법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자치입법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o 그런데 자치입법권은 자치단체의 자체 권한이면서 국가의 법규체계인 법령, 상급 자치단체(시·도)의 자치법규와의 관계에서 존재하게 된다. 자치입법권은 「헌법」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사하게 한다. 또한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행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o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후 그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 중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개정을 하는데 그동안 행정수요의 다변화,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지방분권화에 대응하기위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계속될 것이다.
- o 그런데 조례는 지역실정, 주민생활, 자치행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있으므로 조례가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나,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특히, 조례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가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한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o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1991년 이후 제·개정해온 조례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사후평가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o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조례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연구를 통해 조례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 불편사항, 지역발전 저해, 법령위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o 이번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가 지역의 현실과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범위

- o 이 연구의 분석범위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관 조례 총 259개를 전수조사 하였다.
- o 그리고 연구대상 외에 대구광역시 서구에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 일부를 마련하여 제정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 o 연구 방법은 문제가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259개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조문별로 문제를 검토한 후에 개정 의견(조문별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 81개에 대해 조문별로 문제점 및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 3건의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입법 평가 기준설정 및 조문별 문제점 분석·제시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에 따른 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여부
-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등 규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 기본조례 활용 필요성 및 위원회 통합(대행)운영 가능 여부
-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여부

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견수렴

- 이 연구의 지역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설문조사와 중간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다. 입법전문가 자문

- 입법업무를 수행한 입법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정확성·실효성 제고

라. 조례의 조문별 정비·개선안 제시

- 대구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하여 의견제시
- 장기간 미정비 및 비적용으로 유명무실,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의견제시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 어문, 규정 등을 정비

제4절 연구진 구성 및 추진일정

가. 연구진 구성

- 연구진 : 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2명

나. 추진일정

- 소요기간 : 2021. 8. 30. ~ 2021. 11. 29.(90일간)

- 추진일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일)			특기사항
T T	+30일	+60일	+90일	득기/18
·조례규정 현황 분석 및 평 가 대상 규정 확정				· 착수보고
·평가대상 조례 조문별 평가 기준별 평가 시행 ·평가기준별 문제점 도출				· 중간보고(30개) 및 5월 토론회 · 중간보고(30개) 및 6월 토론회 · 중간보고(30개) 및 7월 토론회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조례(조문)에 대한 정비·개 선방안 마련				·최종보고

* 과업추진일정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연구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제2장 조례 규정의 분석기준

1. 조례 분석기준 설정

o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규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기준이 필요하다. 조례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가. 상위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포함) 여부

- o 조례는 법령안에서 제정해야 하므로 우선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위임범위 일탈, 즉 상위법령 위배 여부이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 o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개정법 제28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 규정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 측면에서 분석되다.

나.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여부

- o 상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제22조(개정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기 때문이다.
- o 특히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된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여부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등 규제 여부

o 조례에서 주민의 의무부담 및 권리제한 규정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개정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의무부담 등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라.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o 조례 규정 중에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주는 규정이 있다. 특히,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규제도 있다. 조례 규정 중에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o 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유사한 조례가 중복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법체계가 복잡하고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중복 조례는 통폐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중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무를 포함한 조례에 대해 통·폐합필요 여부 측면에서 검토한다.

바. 기본조례 활용 가능 여부

- o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사례금 지급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기본조례라 한다.
- o 개별 조례 제정 시에 조례 시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정(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착·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사례금 지급 등 기본조례에 있는 규정)을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별 조례에서 위 규정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다.
- o 따라서 각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사례금 지급 등 기본조례에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기본조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법체계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사. 자문기관(위원회) 통합(대행)운영 가능 여부

- o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심의 및 자문, 협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자문기관)를 조례에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그 자문기관(위원회) 설치가 무분별하게 되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됨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 o 「지방자치법」에서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6조의2제2항/개정법 제130조제4항). 위원회 설치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각 조례에 위원회 가운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위원회 통합(대행)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다.

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 여부

o 입법체계에 맞추어 규정해야 통일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고 적용 및 이해가 쉽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일정한 입법체계에 따라야 한다. 조례가 일정한 입안기준(입법체계)에 맞게 규정되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2. 조례 분석기준 적용방법

o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중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례를 평가·분석하여 조문별로 합리적인 대안 즉, 개정안(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구 조례 259건 전부를 각 조문단위로 위에서 설명한 조례 분석기준대로 평가·분석하였다.

제3장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분석

제1절 의회

1.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1)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u>, <u>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u>의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이하"위 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u>승락을받아야</u> 한다.
 -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u>지방자치법 제64조</u>의 규정에 의한다.

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법", "영" 및 "위원"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의 약칭이 사용되지 않 음.
- o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이 제134조 에서 제150조로, 제3조의 인용조문이 제64조에서 제73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에서 부터 제3조까지 개정)

o 제1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고, 시행령 도 개정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이 경우 시행일을 2022.1.13.으로 해야 할 것임).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 의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

했

혅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수)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 제2조(위원의 수)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 명 이하로 한다.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 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 및 제00조에 따른 대구광<u>역시서구결산검사</u>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 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 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받아야 한다.
-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u>지방자치법 제</u>64조의 규정에 의한다.
- 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u>「지방자치법」</u>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제4조(위촉기간)부터 제11조(수당의 계산)까지

(가) 조문규정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② <u>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u>.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u>기간을연장할</u>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 다.
 -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u>관련있는</u>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위원이 될 수없다.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u>출석요구가</u> 있을 때에는출석하여 설명한다.
 -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검사한다.
 - 1. ~ 6. (생 략)
 -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③ 기타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u>자료의</u>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u>구청장에게제</u> <u>출할</u>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위원간에</u>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u>위촉기간중에서</u> 위원에게 별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u>검사기간중의</u>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4조제2항에서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결산검사기간은 통상 20일이 소요되고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20일의 위촉기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다) 제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개정)

o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
다.	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u>20일</u> 이내로 한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u>30일</u> 이내로 한
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u>기간을연장할</u> 수 있다.	때에는 그 <u>기간을 연장할</u>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
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 다.

-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 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위원이 될 수없다.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 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 다.
 -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 구가있을 때에는출석하여 설명한다.
 -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 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 6. (생략)
 -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 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 를 갈음한다.
 - ③ 기타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 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 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 료의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 게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 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 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 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 다.
-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 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 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 다.
 - ③ 기타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 한 기준을 준용한다.
 - 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00조제00항에 따른 검사의견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 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별 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위촉기간 중 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 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 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 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 다.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 간은 이에 포함한다.

- 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다.
-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별 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 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 간은 이에 포함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대구광역 시 서구의회 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 차 등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91 조제2항이 제103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91</u>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91</u>
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	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
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사무	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사무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사무국의 설치) 및 제5조(직원의 정원)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로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90조 및 제91조가 제102조 및 제103조로 각각 변경되었음.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2022.1.13. 시행 예정인 개정「지방 자치법」 규정에 맞추고 약칭을 정리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0조</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u>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
<u>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u> 사무를	<u>역시 서구의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u>정수(이하"정</u>	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u>원"이라 한다)</u>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 를 처리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 의 정원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 원조례로정한다.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 를 처리한다.

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6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6조(상임위원장) 및 제13조(준용규정)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중에서「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를 준용하되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이 아닌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o 또한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이 제62조에서 제71조로 변경되었음.
- o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약칭 규정 없이 제13조에서 "의회규칙"이 라 표현하였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6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고 제2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약칭을 정리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2조</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u>의</u>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u>71조의</u>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	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의회에</u> 두는 상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대구광역시 서</u>
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u>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u> 두는 상임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
-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내
-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 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 다.
 - ②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 조를 준용하되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이 아닌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 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 기와 같다.
 -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
-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내
- 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 다.
- ②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 중에 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준 용하되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이 아닌 무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 다.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 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유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7조(겸직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제11조 (징계 등)

(가) 조문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 7.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면서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가 각각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 여야 함.
- o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을 잘 못 표기한 것임.

(다) 제안(제1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개정)

o 제1조. 제2조 및 제1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제8조 를 개정하여 잘 못 인용한 법률명을 바로잡음.

혅 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u>제35조제1항</u> 각 호의 직 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 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 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개정 의견

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u>제43조제1항</u> 각 호의 직 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 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 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 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u>제36조제2항에</u>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u>「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u>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한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 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u>제44조제2항에</u>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하여야 한다.
- 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에 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거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안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유리특별 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 위 발견
-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 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 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 고를 거부
- 7.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 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 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 위 발견
-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 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 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 고를 거부
- 7. 「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대구광 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의정활동비) 및 제6조(여비지급기준)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 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 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외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의 여행지급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33 조가 제40조로 변경되었음.
- o 제6조에서 "국내·외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여행 지급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라고 규정하 였는데, "여행지급 범위"는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은 "「공 무원 여비 규정」"을 각각 잘 못 표기하였고, "로 한다"는 개정 원문을 잘 못 표기한 오류임.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6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하고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반영하고 제6조의 오류를 바로잡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u>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40조 및 동법시행령 제00조2)에 따라 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 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는 의정자 제2조(의정활동비) ① 대구광역시 서구 의 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 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 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외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 표 5의 여행지급 범위에서 「공무원 여 비지급 규정 | 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 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 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 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외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 표 5]의 여비 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 비 규정 | 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5조(심의) 및 제6조(준용규정)

^{2)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 조항으로 정리해야 할 것임.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u>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u>의회의</u> 연간 회의 <u>총일수는</u>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u>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27조 및 제134조가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142조 및 제150조로 각각 변경되었음.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 개정)

o 제1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하고 제1조의 약칭을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하며 기타 자구정리를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u>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 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 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 산안의 의결 및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 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00조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서 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 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 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 142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 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 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 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 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 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3)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 조항으로 정리해야 할 것임.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범위)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u>의 규정에 의하여 <u>대</u> <u>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u>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부구청장
-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실장·과장급 및 소장
-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42 조가 제51조로, 제2조의 인용조문 제113조 내지 제116조가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각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	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
<u>"이라 한다) 제4</u>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	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구광역시 서구의	회(이하"의회"라 한다)또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목적으로 한 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 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 1. 부구청장
-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실장·과장 급 및 소장
-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 의 실·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부구청장
-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 급 및 소장
- 3. 「지방자치법」법 제1<u>26조부터 제129</u> 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
- 의 실·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햇하는 햇젓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햇젓사무 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9조의2(증인의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4(고발의 절차) 및 제9조의5 (과태료부과)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구 본청 실·과
-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하부행정기관 : 보건소, 문화회관, 동
-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다만, 본회의가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와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중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 제9조의2(증인의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 략)
 - 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제9조의4(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의5(과태료부과)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중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이 조례의 인용조문 제9 조가 제13조로, 제41조가 제50조로, 제104조가 제117조로,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가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제117조가 제131조로, 제120조가 제134조로, 제146조가 제163조로 각각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개정)

- o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 o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는 앞으로 공포될 개정령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혅 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 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 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대구광역시서구 제2조(감사)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 (이하"구"라 한다)의 사무를 <u>감사하거나</u>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1. 구 본청 실·과
-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 의한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하부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서구(이 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 하"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 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1. 구 본청 실·과
-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

정기관: 보건소, 문화회관, 동

-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 한 지방공기업
-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 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 의 사무와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 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중 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② (생략)

- 제9조의2(증인의보호 및 실비보상) ① · 제9조의2(증인의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 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 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 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 다.

② (생략)

제9조의5(과태료부과) 제9조제1항의 요구 제9조의5(과태료부과) 제9조제1항의 요구

- 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하부행정기관 : 보 건소, 문화회관, 동
-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② (생 략)

(1)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구 의 사무와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 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중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 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② (생략)

- ② (생략)
-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 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 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제9조의4(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 | 제9조의4(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u>제</u> 50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생략)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는 경우, 선서 |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0 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 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부과대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받은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 조문 제41조가 제50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법</u>	제1조(목적) 이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	<u>50</u> 조에 따른
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	관하여 필요학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서구	제2조(부과대상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	의회(이하 "의
사 및 조사를 위하여 <u>법 제41조 제4항의</u>	사 및 조사를
<u>규정에 의한</u> 서류제출 <u>요구</u> 받은 자와	<u>50</u> 조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u>증인중</u> 다음 각 호의	은 자와 출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각 호의 어느
있다.	부과할 수 있
1. 정당한 <u>이유없이</u>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정당한 <u></u>

-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 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의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y) 과태료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 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네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 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다.

-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 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
- 2. 대구광역시서구 소속공무원
- 3. 대구광역시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 직원
-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을 지급 받는 공무원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 및 제3조의 인용 조문 제41조와 제146조가 각각 제50조와 제163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개정)

o 제1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u>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	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제
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	00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u>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u> 지급할 실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 이	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u>라 한다)에게</u>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 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 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 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
 - 2. 대구광역시서구 소속공무원
 - 3. 대구광역시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 의 임·직원
 - 급 받는 공무워
-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 용하다.
-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대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대 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 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 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조(실비)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 차)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 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
-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1.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기준에 의한다.

- 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 3.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을 지 4. 기타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등을 지급 받는 공무워
-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 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 하다.
 - 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 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 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기획예산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10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 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104 조가 제117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

장이 관할하는 <u>사무중</u>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 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 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할하는 <u>사무 중</u>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조문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 조례의 문제점

- o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정수·자격, 회의의 운영방법, 위원의 제척 · 해촉, 간사, 수당규정 등이 필요함.
- o 이러한 규정들을 개별 조례마다 모두 규정하게 되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o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각의 조례에서 공통된 부분을 개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두고 있음(입법례: 대구, 동구, 남구, 북구, 중구, 달 서구, 수성구 조례 참조).
- o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고4),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3) 제안(「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칭) 제정)

o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각종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칭)의 제정,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은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회의 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마치「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하다.
- 5.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6.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3. 그 밖에 구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위원회의 소속,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
 - 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구성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

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3. 위원회 예산 현황 등
 -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나.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구성) 및 제3조(결정사항)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서구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 8.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결정" 및 "위원회" 등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o 또한 제1조는 해당 조례를 규정하게 된 목적을 적시하는 조항인데, 목적 조항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의 설치근 거와 정식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3조 개정)

o 제1조에 해당 조례의 규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명 칭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며, 제3조에 "결정"의 약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u>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u>
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 "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2조(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정한다.

1. ~ 8. (생 략)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 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 ~ 제5항과 같음)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 하여 자문, 심의, 연구 또는 의결(이하 " 결정"이라 한다)한다.

1. ~ 8. (현행과 같음)

4.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서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 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11조(위원회 존속기간)

(가) 조문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존속기간) 위원회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116 조가 제130조로 변경되었음.
- o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11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 o 제11조의 존속기간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계속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임.

혅 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의 장기발전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의 장기발전 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 의 및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 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 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의견

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 의 및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 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설치하 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존속기간) 위원회 존속기간 제11조(위원회 존속기간) 위원회 존속기간 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위원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

는 폐지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5.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0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 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o 이 조례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o 조례 제정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제104조5)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타당한 인용임. 다만, 현행「지방자치법」제104조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117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o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60을 이 조례의 직접적인 제정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왜냐하면, 이 규정의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민간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에 관한 규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없기 때문임. 다만, 이 조례의 직접적인 제정 근거로 명시할 수는 없으 나 이 조례를 해석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원 용할 수는 있을 것임.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에서 근거조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⁵⁾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⁶⁾ 제1조(목적) 이 영은「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은 삭제하고, "구청장"의 약칭을 제2조에서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수정함.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 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 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 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 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 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 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 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 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 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의견

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 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 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 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 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 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 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 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 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라 함은 구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법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말하다.
-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 정기준"에준하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법", "영" 및 "의회"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o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인용조문이 제34조에서 제42 조로 변경되었음.
- o 제2조제1호에서 ""직무"라 함은 구의회의원의 <u>회기중</u> 직무(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42조7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직무를 회기와 관련이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 o 제3조제2항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3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법", "영" 및 "의회" 등의 약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리 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수정함.
- o "시행령 제35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할 것임(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22.1.13으로 해야 할 것임).
- o 제2조 "직무"의 정의를 개정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취지에 따라 개정함.
- o 제3조를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8)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 제</u>

⁷⁾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 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9.21. 제정되어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 적으로 정하였다.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이하"구의회 "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라 함은 구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법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말한다.
 -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 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 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 하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 해인정기준"에준한다.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의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의 직 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 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 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 역시 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9)을 말한다.
 -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0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 다.
 -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 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 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 하다.
 - 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때
-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준한다.

(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기능),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및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가) 조문규정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의회의원</u> 당해년도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u>당해연도</u>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호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 령 제45조에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u>"상해"라 함은</u>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서구에</u>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u>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u>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u>각호의</u> 1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구의회의원 1인
 - 2.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 3. 의무직 공무원 1인
 -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 ③ 제2항제1호에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회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⁹⁾ 입법례에서 여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개정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 3. 보상금 지급금액
-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u>공무원인위원이</u>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서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u>30일이내</u>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u>각호의</u> 청구자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u>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을 경유하여 <u>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한다.</u>
-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u>지</u>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 지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5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2018. 3. 20.)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옮겨서 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o 제6조에서는 위원장이 위원 정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다) 제안(제3조 및 제5조 개정)

- o 제5조를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위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정리함.
- o 제6조를 개정하여 위원 정수에 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함.
- o 기타 체계자구를 정리함.

쳙 행

-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의 원 당해년도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 한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금액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 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호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 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 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 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 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견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시의회의원" 이라 한다)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 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호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 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 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 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규정된 "장애등급" 제1 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 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 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 광역시서구에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 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구의회의원 1인
- 2.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 3. 의무직 공무원 1인
-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 ③ 제2항제1호에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 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 3. 보상금 지급금액
-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

시행령 |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 다.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 광역시 서구에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 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인에 해 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 1. 의원 1인
- 2. 구 소속 국장 1인
- 3. 의무직 공무원 1인
-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회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제7조(심의회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 3. 보상금 지급금액
-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

- 속 공무원인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 | 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 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 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 이
 - 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 항 각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 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 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 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 결과

-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 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 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 이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 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 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 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다.
 -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

통보	하여이	: 한다.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_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 제30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112 조가 제125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u>
<u>112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u>125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
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로 한다.

8.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12조, 제113조, 제114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u>제13조의 규정에</u>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u>제113조와</u>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구에 서구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 로 조례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이 조례의 인용조문 제4 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가 각각 제7조.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7조로 각각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함.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 시 서구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라 한다) 제113조<u>와</u> 「지역보건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

원센터를 설치한다.

- 개정 의견
- 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 원센터를 설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 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은 별표 1과 같다.
-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서구문화회관(이하 "문화회 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 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에 서구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 |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 라 동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 례로 정한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근거법령

o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제15조(위원의 임기)
- (가) 조문규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13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는 ①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②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③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의 기능을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동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기능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o 제15조에서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3조 및 제15조 개정)

- o 제13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제15조를 개정하여 위촉직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다음 각</u>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다음 각</u>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u>견 수렴</u>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
우선순위 심의_	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

¹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u>다음 각</u>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u>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u>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 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 한 활동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 회 기능),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5조(교부결정), 제18조(교부방 법)제18조,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26조, 제27조(중요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및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생략)
-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u>법 제32조의3에 따라</u>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 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u>다)를 설치한다.
- ② ~ ⑥ (생 략)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u>법 제32조의2제4항</u>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⑥ (생 략)
-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2. ~ 4. (생 략)
-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u>실적비로</u>,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u>법 제17조제2항의</u>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u>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u> 위반한 경우
- 3. ~ 7. (생 략)

③ ~ ⑦ (생 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u>법 제32조의9제1항</u> <u>에 따라</u>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u>법 제60조에 따라</u>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2021년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개정)

o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 법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동 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인용 조항을 개정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단체 보</u>
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
<u>규정에 따라</u>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u>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u>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u>법 제</u> 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

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u>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 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u>제1항 및 제3항에 따라</u>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 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u>법 제</u> 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를 설치하다.</u>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 삭제
- $3. \sim 5.$
- 6.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 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 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 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 4. (생 략)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 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다

-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사항
- $3. \sim 5.$
-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 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 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 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 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 4. (현행과 같음)
-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 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 그 밖의 사 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 | 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

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 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 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 분을 위반한 경우

3. ~ 7. (생략)

③ ~ ⑦ (생 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 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 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 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 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 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 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 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 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 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년 ()월 ()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 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다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함.(추가 검토)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재정법」제60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재정법」제60조제3항¹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있음.

(다) 제안(제4조 삭제)

o 제4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이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

¹¹⁾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 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 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 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을 두어야 함.

1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 연도 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12)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¹²⁾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u>지방자치단체는</u> 회계연도 <u>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u> <u>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 <u>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 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이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지 임의 조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위임 조례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 o 또한 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4조 개정 및 제1조의2 신설)

- o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제1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두고, 이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정리함.

혀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서구의</u>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 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통합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 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 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 다)을 둔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 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 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 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4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 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 로 충당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 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세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 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 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4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2)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심 의), 제8조(회계공무원) 및 제10조(존속기한)

(가) 조문규정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 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 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5. <u>기금의</u>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생략)
- 제8조(회계공무원) ① <u>기금의</u>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u>기금을</u>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신설 제안한 제1조의2)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약칭하기로 함. 그러나 제2조 이하에서 통합기금 또는 기금으로 혼용하고 있음.

(다) 제안(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개정)

o 제2조 이하에서 사용된 "기금" 중 반드시 "통합기금"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사용된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또는 제2조의 약칭 "통합기금"을 "기금"으로 수정해도 됨).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u>기금</u>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u>통합</u>
<u>을</u>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u>기금을</u>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
예치·관리하고, <u>기금운용계획에</u> 의하여	여 예치·관리하고, <u>통합기금운용계획에</u>
운용하여야 한다.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u>기금의</u>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u>통합기금의</u>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 핤
-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생 략)
- 관리 ·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 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통합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 경에 관한 사항
 -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5. 통합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 ③ (생 략)
-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 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 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수당)

(가) 조문규정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근 거 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다) 제안(제8조 개정 또는 제9조의3 신설)

- o 제1안: 제8조를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당 등 지급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함.
- o 제2안: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제정할 경우에는 위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명시하는 대신 제8조를 삭제하고 제정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1안>	<제1안>
제8조(수당 등) <u>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u>	제8조(수당 등) <u>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u>
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
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제2안>

제8조(수당 등) <u>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u>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아니한다.

<제2안>

<삭 제>

제9조의4(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2)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가) 조문규정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¹³⁾ 및 같은 법 제22조¹⁴⁾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등의 소

¹³⁾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¹⁴⁾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징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9조의3 신설)

o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징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 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 년도 <u>재산등록.선물신고</u> 및 퇴직공직자 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 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 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결 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o 자치조례
-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문제점
-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 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내부 공익신고자" 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고, 조례 본문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1조에서 사용하고 있음.
- o 제2조제1호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을 누락하였고, 제3호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나, 이 조례에 "내부 공익신고 자"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지 않았음.

(다) 제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구"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 "내부 공익신고자" 등 불필요 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공무원 등"의 용어 정의에 <u>구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구 소속</u>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시킴.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u>서구</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u>서구</u>
(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과 절차,
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어 있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말 한다.
- 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 무원 등을 말한다.

-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 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 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에 소속되 1. "공무원 등"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 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구 소속 무기계 약근로자,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사 회복무요원을 말한다.
-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3. "내부 공익신고자" 란 제3조에서 정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8조 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2)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및 제4조(신고기한)

(가) 조문규정

-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 급하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 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신고대상의 신고기한은 행위일

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u>한다.다만</u>,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3조에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였으나 제2조제2호에 "부조리"의 용어 정의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약칭은 불필요함.
- o 제3조제2호에서 신고대상 행위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구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음.
- o 제3조제3호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요건이 제2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o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공 무원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도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제안(제3조 및 제4조 개정)

- o 제3조를 개정하여 제3조 본문에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제 2호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분을 삭제함.
- o 신고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제3조제3호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와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강요·유인 행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 함.
- o 그밖에 제4조의 체계자구를 정리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u>보상금 지급대</u>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u>공무원 등이 다</u>
<u>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	를 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한 사람
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 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나에서 정한 신고대상의 신고기한은 행 위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행위를 인지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다만, 신 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 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 위
-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4.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방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 대하게 위반한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 제4조(신고기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한 신고대상의 신고기한은 행 위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행위를 인지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 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 제5조(신고방법) 및 제6조(신고자의 보호)

(가) 조문규정

-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 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 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조리 관련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부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o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5조 및 제6조 개정)

- o 제5조를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를 구 감사부서에 할 수 있도록 함.
- o 제6조를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혅 했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 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 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생 략)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 를 받지 못한다.

<신 설>

개정 의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현행과 같 음)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 를 받지 못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6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어,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 조항이 좋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었음.
- o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 세로 낮추고,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도 구의 경우 2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및 인원수를 "19세 이상 주민 150명"을 "18

세 이상 주민 000명"으로 개정함.

혀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6조에 따라"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 역시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 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 구시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19</u> 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제</u> 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 구시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18</u> 세 이상 주민 000명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제21조15) 개정내용 요약

- * 청구대상자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 * 청구주민 수
 - 시·도 : 500인 이내→300인 이내
 - 50만 이상 도시 : 300인 이내→200인 이내
 - 시·군·구 : 200인 이내→150인 이내
- * 주민감사청구 제기기간: 사무처리 일(끝난 날)부터
- 2년 이내-→3년 이내

¹⁵⁾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u>18세 이상의 주민</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한다)은 <u>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u>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 된 사항

16.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위촉)

(가) 조문규정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 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조제1항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인원 제한이 없음.
- o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 청장의 위촉방법에 재량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자의적 위촉의 가능성을 남김.

(다) 제안(제2조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 ⑭ (생 략)

o 제2조제1항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정하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위촉방 법의 재량의 여지를 제거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	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
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	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u>00명 이내</u>
를 위촉할 수 있다.	<u>의</u>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
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	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
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	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
로 <u>위촉할 수 있다.</u>	로 <u>위촉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7.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회의) 및 제8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필수적인데, 이 조례에서는 위원의 제착·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o 제8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을 명시하지 않았음.

(다) 제안(제5조 개정, 제8조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 o 제1안: 위원의 제착·기피·회피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앞에서 제시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당 등에 관한 내용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제2안: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도 「대구 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당 지급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u>공</u>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u>공</u>
<u>익등</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	<u>익 등</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정이 <u>있을때에는</u>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결정이 <u>있을 때에는</u> 이를 공개하지 않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
- ⑥ (생략)

<제1안>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안>

제8조(수당 등) <u>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u> 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현행과 같음)

<제1안>

<삭 제>

제9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안>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66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書)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15조, 제66조의3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9조(작성대상),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13조(연서 주민수), 제14조(자치법규 등의 공포 절차), 제15조(예산 등), 제16조(번호) 및 제17조(공포방법 등)

(가) 조문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66조의 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書)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9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한다.
- 제13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제14조(자치법규 등의 공포 절차) ① · 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5조(예산 등) 「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번호) ① · ② (생 략)

-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이어서 변경된 조 번호에 맞추어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임.
- o 특히 현행「지방자치법」제15조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19조¹⁶⁾로 변경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 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o 이 조례 제13조에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17)에서는 주민 수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음. 구체적인 주민 수는 지자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 제안(제1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개정)

o 관련 조항의 인용 조문을 새로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새로 제

¹⁶⁾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¹⁷⁾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률의 인용 조 문을 정비함.

혅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 정」제20조.「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 66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 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連書)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 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지방자치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 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 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 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 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 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 여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3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 제13조(연서 주민수) 「주민조례발안에 관 조에 따라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개정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9 조. 제7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률」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 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書) 주민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지방자치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 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 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 야 하다.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 행과 같음)
 -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 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 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민이 구 조례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14조(자치법규 등의 공포 절차) ① · ② | 제14조(자치법규 등의 공포 절차)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 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 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5조(예산 등) 「지방자치법」제133조제 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 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번호) ① · ② (생 략)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는「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제10 조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 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 등은 제17조(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 시판에 게시한다.

주민수는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 만, 연서 주민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 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 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5조(예산 등) 「지방자치법」제149조제 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 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번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는「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제10 조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 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 시판에 게시한다.

19.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9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u>「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u>「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u>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u>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u> 둔다.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 <u>다.</u> 이 경우 <u>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u>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u>지원위원회</u>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지원위원회</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u>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모법인 「지방공무원 법」이 2021.6.8.개정(2021.12.9.시행)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또한 2021.7.2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o 제1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¹⁸⁾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 o 제2조에서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법」제75조의2제1항으로 이동하였음.
- o 제3조제1항 본문에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9.8.6. 운영규정 제정 당시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하였으나 2020.8.25.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그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또한「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였음.
- o 제3조제1항제1호의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도 "운영규 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함.
- 제3조제2항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후 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극행정 장려제도"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인사 상 우대를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그러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외의 다른 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는 안 될 것임19).
- o 제3조제2항의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도 개정된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수정되어야 함.
- o 또한 제3조제2항 후단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18)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u>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u> <u>둔다.</u> 다만, <u>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 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u>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제75조의2의 입법취지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인사 상 우대를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는데 있어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인사위원회 외의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데,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o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o 제9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개정 및 제6조 삭제)

- o 제1조를 개정하여 이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를 적 시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구청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로 「지방공무원 법」제75조의2제1항을 적시함.
- o 제3조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또한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며, 심의사항제1호도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변경 함.
- o 제3조제2항를 개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 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영 제10조 제1항제2호"로 수정하며,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o 제6조를 삭제함.
- o 제9조를 개정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를 적시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
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	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
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	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
성하기 위해 <u>「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u>	성하기 위해 <u>「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u>
<u>영규정」에서</u>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서</u>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 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 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 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 능)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항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 수공무원 선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대구광 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 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 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 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능)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 수공무원 선발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 의 · 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하다.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 <삭 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 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 렇지 않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 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 다.

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총무

1.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조문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서구를 상징하는 것들은 구기, 문장, 휘장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²⁰⁾가 규정하고 있는 구화, 구목, 구조 등이 있음.
- o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것들을 두 개의 조례에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서구의 상징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제안

20)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치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구나무(구목)는 소나무로 한다.
- 2. 구 꽃(구화)는 진달래로 한다.
- 3. 구 새(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1. 구 간행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
-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

o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입법례 :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문양을 말한다.
- 3.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 4.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 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 제3조(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00

2. 문장: 별표00

3. 휘장 : 별표00

4. 캐릭터 : 별표00

5. 브랜드슬로건 : 별표00

6. 구 나무 : 별표00

7. 구 꽃 : 별표00

8. 구 새 : 별표00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을 제정 ·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사용) 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히 사용해야한다.
 -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③ 구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 1. 옥외게양용 사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깃대에 게양하며 그 외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보 관할 수 있다.
 - 나.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2. 옥내비치용은 구청장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실, 동장실에 비치하며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각각 1개씩 제작·보관할 수 있다.
 -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 ⑤ 상징물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캐릭터를 고정물에 부착·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 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00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00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

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 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상징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2. 사용승인 및 취소
 - 3. 제3조제4호의 제작 및 부착 위치·장소와 소요예산
 - 4. 홍보매체 활용방안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000국장, 000국장으로 한다.
 - 1. 심의대상 상징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의회의원 2명
- 제11조(운영)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 해당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하며 7일 이상 지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친 때에는 자동 해체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000과장으로 하다.
- 제14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 직 및 운영) 및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
-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 민홍보.계몽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
-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방위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1. ~ 7. (생략)
 -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실.

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법" 및 "협의회" 등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o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설치 근 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²¹⁾에서는 통합방위협의 회의 심의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통합방위법」에서 열 거하지 않은 사항인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포 함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법", "협의회" 및 "지원본부"에 대한 약칭을 각각 제10조, 제 2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통합방위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인 제4호를 삭제할 필 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이</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9조의 규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
<u>에 의하여</u>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u>통</u>	역시 서구 <u>통합방위협의회</u> 및 대구광역
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시 서구 <u>통합방위지원본부의</u> 구성 및
대구광역시 서구 <u>통합방위지원본부(이</u>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²¹⁾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u>구 통합방위협의회(</u>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u>는 다</u>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 을 심의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
-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 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 고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
-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 원이 제출하는 안건
- 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 협의회

- 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구 통 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
 -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및 지역주 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 이고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 <삭 제>
-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 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 다.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 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 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구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 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 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 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1. 총괄지원반
 - 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 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 4. 의료.구호지원반
 - 5. 통신.전산지원반
 - 6. 보급.급식지원반
 - 7. 홍보지원반
 -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 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 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 속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 ⑤ 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⑤ 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다.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 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 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 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지원 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 부장은 동장이 된다.
-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 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 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1. 총괄지원반
 - 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 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 4. 의료·구호지원반
 - 5. 통신·전산지원반
 - 6. 보급·급식지원반
 - 7. 홍보지원반
-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 속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 정하다.
-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underline{\text{tl}}$ 제9 $\boxed{\text{제}10}$ 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boxed{\text{ }}$ $\boxed{\text{ }}$ 통합 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본부 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 | 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

<u>다.</u>	<u>영한다.</u>
② (생략)	② (생 략)

3.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 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4조의 의2제1항이 제7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현 행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u>동의명칭과</u> 구역에	대구광역시 서구 <u>동의 명칭과</u> 구역에

관한 조례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 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 으로써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구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 조문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 이나 구 소재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구 민"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워(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 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제안을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하다.
-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삭제
 -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4. 일반 통념 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6.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7. 삭제
 - 8.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제1항에서 "제안"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안"이라는 하나의 사항을 별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4조 삭제)

o 제2조제1항의 "제안"에 대한 용어 정의에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 이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

나 구 소재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이하 "구민"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 7. (생 략)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 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제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 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 이나 구 소재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이하 "구민"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u>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u>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u>다. 일반 통념 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u> 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 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 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
 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 7. (현행과 같음)

<삭 제>

- 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 이 이와 유사한 것
- 4. 일반 통념 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것
-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 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 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6.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7. 삭제
- 8.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 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가) 조문규정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 2.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 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임. 따라서 준용규정이 필요치 않음.
- o 그리고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위원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8조 개정)

o 제8조제2항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정리를 함.

혀 행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다.
 -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급 외 우수 제안의 선정
 - 2.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개정 의견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 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u>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u>대구광역시 서구</u>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 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급 외 우수 제안의 선정
 - 2.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가) 조문규정

-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① <u>구청장은</u>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0조제1항에서 <u>구청장은</u>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u>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²²⁾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있고 그 권리의 성격도 공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출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명의로 하여야할 것임.

(다) 제안(제20조 개정)

o 제20조제1항을 개정하여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① <u>구청장은</u>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	① <u>대구광역시 서구는</u> 채택제안이 「발
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²²⁾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u>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u>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그 권리를 승계한다.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 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예정)되면서 제8조가 제 12조로 변경되었고, 시행령 제8조도 변경될 예정임.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인용 조항을 정리함.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해당 조항도 그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u>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0조(수강료 등)

(가) 조문규정

- 제10조(수강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포함)을 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수강료(사용료 포함)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③ 수강료(사용료 포함)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수강료(사용료 포함)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사용료 포함)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의하여 <u>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u>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동장은 "수강료(사용료 포함)"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u>위원회는 "수강료(사용료 포함)"의 징수·관리·지출 등은</u> <u>위원회 명의로 한다.</u>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10조제2항에서 자치센터 시설 등에 대한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 은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그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규정함.
- o 그런데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심의기관이므로 위원회가 수강료 등을 징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사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옳지 않음.

(다) 제안(제10조 개정)

o 제10조를 개정하여 수강료 등의 징수 및 지출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쳙 행

- 제10조(수강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제10조(수강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수강료 포함)을 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수강료(사용료 포함)는 위 원회에서 징수한다.
 - ③ 수강료(사용료 포함)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 회가 정한다.
 - ④ 수강료(사용료 포함)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 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 (사용료 포함)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 강료(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정 의견

- 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 부터 수강료를 포함한 사용료(이하 "사 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징수한다.
- ③ 수강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 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 다.
- ④ 수강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 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 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수강 료등에 대해서는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u>"수강료(사용료 포함)"</u>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u>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사용료 포함)"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u>

를 거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u>수강료등</u>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1조(이용 등)

(가) 조문규정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1조제2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으 로 되어있어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11조제2항 삭제)

o 주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혀 행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의견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삭 제>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 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제15조(설치)

(가) 조문규정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5조에서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 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제15조의 기능도 이에 맞추어야 할 것임.

(다) 제안(제15조 개정)

o 제15조를 개정하여 제16조와 같이 심의기능만을 수행토록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거나 결정하기</u> 위하여 동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
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둔다.

(5) 제20조(해촉)

(가) 조문규정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당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0조제1항에서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20조제4호 삭제 또는 제20조 전부 삭제)

- o 제1안: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0조제4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o 제2안: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제정할 경우

에는 제20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정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혅 행

개정 의견

<제1안>

-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내지 제5호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당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외 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 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 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 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 다.

<제2안>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삭 제>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내지 제5호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 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당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외 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 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삭 제>
-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 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 다.

- <u>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u> <u>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당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외 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 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 대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 다.

<신 설>

제20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주민투표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가) 조문규정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
- 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4조의 의2제1항이 제7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4조 개정)

현 행	개정 의견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u>제7조제1항에</u>
<u>규정에 의하여</u>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u>따라</u>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
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u>의한</u>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u>주요 결정사항</u>

7. 대구광역시 서구 통 · 반 설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4조의 의2제5항이 제7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4</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7</u>
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한다.

8.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u>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 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6 조제1항이 제9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조</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u>
<u>제1항에</u>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u>9조제1항에</u>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협의회의 설립)

(가) 조문규정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 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 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4조제5항에서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협의회의 대표자의 소속 기관 장에 대한 설립사실 통보 후 소속 기관 장이

협의회 대표자에게 설립증을 교부하면 비로소 설립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임.

o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²³⁾에서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립증을 교부받아야 설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다) 제안(제4조 개정)

o 협의회의 설립시기를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 제5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혀 행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u>7일이상</u>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 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 회를 개최하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u>7일 이상</u>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 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 회를 개최하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

²³⁾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u>7일</u>이내에 별지 제 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에는 <u>20일이내의</u> 기간을 정하여 별지 <u>제3호서식에</u>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u>7일</u>이내에 별지 제 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에는 <u>20일</u>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u>제3호</u>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

나. 근거법령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정의)
- (가) 조문규정
- o 없 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²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 소유의 물품을 무상 대부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o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구 소유 의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없는 실정임.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00조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 소유의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신 설>	제00조(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 소유의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물품의 종류, 대부시간, 대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²⁴⁾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u>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u>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 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o 「지방재정법」제95조
-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및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 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2016.11.30.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5조는 「지방회계법」 제50 조²⁵⁾ 로, 제94조는 제49²⁶⁾조로 각각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7조 개정)

²⁵⁾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²⁶⁾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는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제7조 중 「지방재정 법」제94조는 「지방회계법」제49조로 각각 개정함.

혅 행

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 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 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 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 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 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 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 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 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 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제3조(재정보증)

(가) 조문규정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 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²⁷⁾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 입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재정보증방법을 보증보험으로 한정하고 공제가입은 인정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3조 개정)

o 제3조를 개정하여 재정보증방법으로 보증보험 외에 공제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행

-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 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 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방법은 <u>보증보험으로</u>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 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 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 정보증기간을 <u>3년으로하여</u> 체결할 수 있 다.

개정 의견

-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 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 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방법은 <u>보증보험 또는 공제</u> <u>가입으로</u>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 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u>3년으로 하여</u> 체결할 수있다.

²⁷⁾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절 문화홍보

1.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o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검토 참조

2.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 시 서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가) 조문규정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문화 사업을 수행 한다.

-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10.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에서 「지방문화원진홍법」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서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홍법」제8조의 사업내용과 이 조례 제2조의 사업내용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며²⁸⁾, 법에서 지역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였으므로 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음. 특히 조례 제10호의 사업은 그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지방문화원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하게 될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 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문화 사업을 수행 한다. 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 •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10.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²⁸⁾ 두 법규의 사업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o 제8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맞추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문화원은 법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제8조에 규정된 문화사업을 수행 한다.
문화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_<삭 제>
<u> 및 선양</u>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_<삭 제>
보존_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_	_<삭 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	_<삭 제>
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_<삭 제>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_<삭 제>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	_<삭 제>
한 문화활동_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_<삭 제>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	_<삭 제>
<u>원</u>	
10.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	_<삭 제>
<u>는 사업</u>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	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전자정부법」제9조 등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가) 조문규정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u>「전자정부법」제9조제2호에</u>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 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야 하며 <u>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u>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 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8조제1항에서 인용한 「전자정부법」제9조제2호는 제9조제2항의 오류임.
- o 제8조제2항에서 인용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6.2.12.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종전 시행령 제8조도 개정 시행령 제9조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8조 개정)

o 제8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서 인용한 「전자정부법」제9조제2호를 제9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인용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바로잡음.

현 행	개정 의견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구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구
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u>제9조제2호에</u> 의한 사이	「전자정부법」 <u>제9조제2항에</u> 의한 사이
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	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
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u>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u> 행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 다.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수 있다.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수 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 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능정보화 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관부서"라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 해소
-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서구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의「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법률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2020.12.10.)되었으며, 인용 조문도 개정 법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함.

- o 제2조제4호의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²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³⁰⁾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제1항³¹⁾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 회 실행계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4조 개정)

o 제2조를 개정하여 각 호에서 용어 정의를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u>「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u> 위임된	여 <u>「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u>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²⁹⁾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³⁰⁾ 제45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

^{31) 「}지능정보화 기본법」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u>"「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u>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 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 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 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 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 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 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 발과 이용 활성화
 -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 해 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 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 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 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 람들을 말한다.
- 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 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 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 발과 이용 활성화
-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

-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u>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u>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 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u>국가정보화</u>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서구정보화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u>「지능정보화 기본법」</u>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 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대구 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u>「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르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u>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서구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평생교육

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u>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³²⁾은 동조 제8항³³⁾ 을 잘 못 인용한 것임.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바로잡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u>제11조제6항</u> 및 「지방자치단체	부금법」 <u>제11조제8항</u> 및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³²⁾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 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³³⁾ ⑧ 시·도 및 시·군·자치<u>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u>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절 세무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

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조제1항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조례에서 법령을 재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재규정해야 할 것임.
- o 그런데 2020.12.29. 「지방세기본법」 제146조³⁴⁾가 개정되면서 제2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권자에 구청장 외에 지방세조합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o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서는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2조제3항에는 누락되어 있음.

³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u>지방세조합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cdot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u>지방세조 합장이</u>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sim ⑦ (생 략)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u>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u>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 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u>지방세조합장은</u>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2호³⁵⁾에서 규정 한 사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함.

혀 했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u>서구청</u> <u>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u>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 여한 사람
-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 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 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

개정 의견

-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u>서구청</u> <u>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장은</u>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 여한 사람
 -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 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 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

³⁵⁾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 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 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 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 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 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 런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 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 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신 설>

-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 수되는 경우
-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 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 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1의1.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 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 수되는 경우
-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 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 급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세특례제한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 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3조에서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대한 약칭을 설명하지 않아 어느 법인지(「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알 수가 없음. 종전의 「대 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에서 약칭 설명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12.27. 전부개정시 제1조에서 약칭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서 설명 하는 것으로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3조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약칭을 규정함.

혅	ਰੋਂ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 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의견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 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절 복지정책

1.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화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 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 3. "가족친화제도"라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3대가 함께하는 한가족의 날, 가족사랑의 날, 자녀 방학 중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 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 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 자를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에서 "가족친화기업"과 "직장맘"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나 이 조례에서 해당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뜻을 정의할 필요는 없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용어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반복하여 정의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2조를 개정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정의된 용어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함. 혀 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 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 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 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 장환경을 말한다.
-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 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 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 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 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 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3대가 함께하는 한가족의 날, 가족사랑의 날,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문화체험 지원
-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 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 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개정 의견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u>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 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 는 기업을 말한다.
-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 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 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 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 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 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

나. 근거법령

o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구 경력 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에서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의 약칭을 규정하였는데 제5조에서 반복하여 약칭을 규정함.

(다) 제안(제5조 개정)

o 제5조를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약칭부분을 삭제함.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 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구 경력단절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 합에 이바지함.

나. 근거법령

o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용어의 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0 이 조례의 시행규칙 근거조항이 없음.

(다) 제안(제2조 개정 및 제14조 신설)

o 제2조를 개정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능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기실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	개정 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u>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 조에 따른다.
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u> </u>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ο 자치조례

다. 현황 및 문제점

- o 이 조례는 2019. 8. 12.(조례 제1172호)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20. 3. 3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당시에는 조례 내용에 맞는 상위법이 없어 자치조례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그 후 상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법의 위임사항 규정 및 집행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아울러 대구 서구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018.8.10.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구광역시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대구광역시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을 흡수, 통폐합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개선방안

o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검토함.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

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 6.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 설치
-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 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 9.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10.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연계 서비스
- 1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 12. 일자리 알선
- 13.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 1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절 사회복지

1.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나. 근거법령

o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계획 수립 등), 제9조(조사 및 연구) 및 제24조(실비변상)

(가) 조문규정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 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 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6조 및 제9조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으므로 약 칭 표현이 필요하고, 제24조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비 지급의 근거 조례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6조, 제9조 및 제24조 개정)

o 제6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약칭을 규정하고, 제24조에 실비 지급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규정함.

혅 했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 산 · 고령사회기본법 | 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 제29조에 따라 인구 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 제24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 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의견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 산 · 고령사회기본법 |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법 제29조 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 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다.

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대구광 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 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근거법령

o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5조와 제7조 사이에 제6조의 조 번호와 조명이 누락되어 있음.
- 0 시행규칙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다) 제안(제6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o 누락된 제6조의 조 번호와 조명을 넣고 기타 체계자구를 바로잡고 누락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
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	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
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	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
회 대구광역시 <u>서구지회(이하"지회"라</u>	회 대구광역시 <u>서구지회를</u> 지원함으로써
<u>한다.)를</u>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책무)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 청장"이라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지회"에 대하여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 2.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업
- 5.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지 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

제2조(책무)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지회"의 조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 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 2.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 업
 - 5.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 제6조(지원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원을 하는 경우"지회"의 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준용) (생 략)

<신 설>

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의 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 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현황 및 문제점

o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 참조

라. 개선방안

o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 참조.

4.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축조심사 및 제안

(1) 조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u>중증장애인</u>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³⁶⁾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³⁷⁾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

하다.

-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 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7.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 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u>대구광역시 서구청장</u>(이하"구청장"이라 한다)<u>은</u>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u>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u>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자립생활지원

- 제4조(계획수립) <u>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u>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u>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필요할 경</u>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할 경우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
 -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교육
 -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5.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 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³⁶⁾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u>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³⁷⁾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quot;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이 조례는 제2조제1항에서 "중증장애인"을 정의하면서 이를 "장애인"으로 약칭하였음.
- o 그러나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등 그 이후 규정에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3) 제안

o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것인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5.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법규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8조 (위탁협약)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단체명
- 2. 위탁기간

-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단체는 주요운영계획, 건축·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단체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수탁단체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8조와 제10조 사이에 제9조의 조 번호와 조명이 누락되어 있음.
- 0 시행규칙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다) 제안(제6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o 누락된 제9조의 조 번호와 조명을 넣고 기타 체계자구를 바로잡고 누락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함.

현 행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
<u> 및운영에관한조례</u>	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u>재</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u>재</u>
<u>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u> 위한 재	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재활교육시설의 명칭은 <u>"대</u>	제2조 (명칭) 재활교육시설의 명칭은 <u>대구</u>
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이하	<u>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이하</u>

"재활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 애인을 말한다.
- 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6조 (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6조 (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 는 장애인
 - 2.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 이 인정하는 장애인
- 제7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내 장애인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 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주요 운영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교육센터를 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단체에 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협약)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단체명
- 2. 위탁기간
-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는 수탁재산

"재활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라 함은 「<u>장애인복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 인을 말한다.
- 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 는 장애인
- 2.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 이 인정하는 장애인
- 제7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장애인단 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 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주요 운영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교육센터를 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단체에 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협약)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단체명
- 2. 위탁기간
-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단체는 주요운영계획, 건축·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단체는 관계법령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u>각호</u> <u>의</u>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단체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수탁단체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단체는 구청장의 <u>동의없이</u>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단체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u>서류등을</u>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 (수탁단체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수탁단체는 주요운영계획, 건축·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u>각</u>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단체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 2. 수탁단체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단체는 구청장의 <u>동의 없이</u>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단체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절 위생

1.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제3조(기금의 용도)

(가) 조문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 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 2. 삭 제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 시서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o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기금 의 용도를 규정함.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89³⁸⁾조에서는 식품 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해당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o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식품위생법」제89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개정)

o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 및 제3항과 각각 일치 시킴.

현 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
<u>(이하 "법"이라 한다)</u> 제89조 및 같은 <u>법</u>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
<u>의 규정에 의거</u>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u>
시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
<u>다)을</u>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제 89조 및 같은 <u>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u> <u>따라</u>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u>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의견

제2조 (기금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재원으 제2조 (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식

³⁸⁾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u>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④ 기금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 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서 정한 사업

2. 삭 제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 目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 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3호(첨부서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 및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위임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 호3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제15의2제10호4이를 잘 못 인용한 것임.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여 이 조례의 위임근거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 <u>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사</u>	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
<u>항과</u>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u>항과</u>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
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15의2</u>	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15의2</u>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	<u>제10호에</u>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다음과 같다.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생 략)

^{39)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0)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10절 경제

1.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41)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협약체결 등) 및 제5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u>제7조제3항</u>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사실조사"란</u>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⁴¹⁾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u>제5조</u>(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u>의무</u>)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1조에서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⁴²⁾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7조제4항⁴³⁾을 잘못 인용한 것임.
- o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조사의 행위주체가 불분명함.
- o 제3조에서 군수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문의 구성이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 o 제4조에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는 "용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o 제5조에서 관련 기관등은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 의무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44)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 조례에서 "관련

⁴²⁾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 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 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⁴³⁾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u>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 뢰할 수 있다**.</u>

⁴⁴⁾ 현행「지방자치법」제22조는 2022.1.13시행되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제28조에 해당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 개정, 제4조 삭제)

- o 제1조를 개정하여 잘못 인용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정리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사실조사의 행위주체를 명시함.
- o 제3조를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함.
- o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절차를 밟 게 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별도의 협약체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제4조를 삭 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0 제5조의 조 제목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 사항"으로 함.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1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 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 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 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 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의견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_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 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 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 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 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 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 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삭 제>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제1호서 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u>위원회는 구단위</u>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협의·조정한 다.

-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 5. (생략)
- ②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위원회"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고, 물가대 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제2조에 신설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물가대책위원회의 <u>설치 및</u> 운영에 필요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설치 및 기능</u>) ① 물가의 안정 및
제2조(<u>기능</u>) <u><신 설></u>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을 위하여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u>
	한다)에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 4. · 5. (생략)
- ②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구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3. <u>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u> 협조에 관한 사항
- 4.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2) 제3조(위원회의 구성)

(가) 조문규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u>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 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o 제3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회의 운영의 공정성 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3조 개정)

- o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위원 중에 위원장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 o 제3조제4항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

개정 의견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u>
<u>1명을 포함하여</u>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10조(의견청취)

(가) 조문규정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6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제6조나 제10조 등은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다) 제안(제4조 및 제6조 개정)

o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	<삭 제>

<u>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u>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 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12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 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서비스·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조제2항에서 "소상공인"을 정의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2020.2.4.), 시행(2021.2.5.)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음.
- o 또한 제2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링」 제2조는 삭제되었음.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정의하지 않고 호로 정의함.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2조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항을 호로 정리함.

혅 개정 의견 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 정의는 다음과 같다. 란 외식업, 이 ·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1. "착한가격업소"란 외<u>식업, 이 · 미용</u>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위생 서비스 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 •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 해 가격 · 위생 · 서비스 · 품질 등 일정 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 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는 업소를 말한다.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이하"서구"라 한다.)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0 제1조와 제4조를 개정하여 "서구"에 대한 약칭을 제4조에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
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대구광</u> 역시 <u>서구(이하"서구"라 한다.)</u>지역실정 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u>서구의</u>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구정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대구광</u> 역시 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u> <u>"서구"라 한다)의</u>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구정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제7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및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가) 조문규정

-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서구 내대구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다.
 - 1. 서구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 2. 서구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서구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서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7조에서「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서구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 치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2항⁴⁵⁾에 따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없음.
- o 특히,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o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이라고 약칭하였는데 "대규모점포등"이라고 붙여 쓰는 것이 옮음.

(다) 제안(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 개정, 제8조 삭제)

- o 제7조를 개정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맞추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7조의 해당 부분과 제8조를 삭제함(입법례: 인천 강화군).
- o "대규모점포 등"의 약칭이 규정된 제8조가 삭제되므로 제7조제1항에 "대규모점포등"의 약칭을 규정하고,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체계자구를 정리함.

혅 행 개정 의견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서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서 구 내 대규모적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 구 내 대규모적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 3에 따른다.

⁴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 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서구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 2. 서구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가. 서구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u> 민단체의 대표

<u>나. 서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u>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 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u>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사람</u>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

<삭 제>

<삭 제>

<u><삭 제></u>

<삭 제>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 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 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 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 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 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 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 점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 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 <삭 제> 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 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 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 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 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 5조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 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 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 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 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 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 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 칙 |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 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 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 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2. 서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 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서구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수산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 2. (생략)

제13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2. 서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 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서구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 2. (생략)

제13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u>대규모점포등</u>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써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의2. ~ 8.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조제5호에서 "상점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⁴⁶⁾ 및 <u>「유통산업발전법</u> 시행령」 제5조⁴⁷⁾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써 도매업·소매

⁴⁶⁾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quot;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 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 13. (}생략)

⁴⁷⁾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 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하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용어를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48)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점가"의 범위와 상이하게 규정함.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2조제4호를 개정하여 "상점가"의 용어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추어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경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써 도매업·소매업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의2. ~ 8. (현행과 같음)

5의2. ~ 8. (생략)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⁴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quot;상점가" 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²의2. ~ 13. (생략)

(2) 제21조(예산의 지원)

(가) 조문규정

-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u>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u>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u>보증보험증권</u>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 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 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1조제3항에서 상인회가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신청 후 에 심사를 거쳐 교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자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것임.

(다) 제안(제21조 개정)

o 제27조제3항을 개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상인회는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보증보 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 ② (생 략)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③ 상인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보조
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교부결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생 략)

④ ~ ⑤(현행과 같음)

(4) 제27조(수탁자의 의무)

(가) 조문규정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7조에서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위수탁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를 조례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7조 개정)

o 제27조의 제목을 "수탁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27조(수탁자의 <u>의무</u>) ① ~ ⑥ (생 략)	제27조(수탁자의 <u>준수사항</u>) ① ~ ⑥ (현
	행과 같음)

6.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o 2021년 2월 5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었음
- o 같은 법 제3조⁴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대구광역시의 경우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서구에는 없음.

나. 개선방안

o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함

다. 제안[「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 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50)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

⁴⁹⁾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 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 1.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중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8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2. 제1호의 소상공인 중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하다)
- 3.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둘 예정인 창업예정자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 제7조(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

-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5.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6. 우수지역 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9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로 0000원 이내로 한다.
 - ④ 기타 특례보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제11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 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3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⁵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u>"소상공인"</u>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절 환경청소

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 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폐기물관리법」제1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및「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행 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 4.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또다시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쳙

o 제1조에서 "대행업체"의 약칭 부분을 삭제함.

했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 14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 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 기물관리법, 및「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 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구 주민을 대 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 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 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 기물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 물 관리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구 주민을 대 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 4.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 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 항 등에 대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 4.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u>수집·운반서</u> 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2)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가) 조문규정

-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 치와 평가 대상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o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51)에서는 평가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 록 규정함. 그런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조치할 사항 중 "영업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19조 및 제20조 개정)

o 제19조 및 제20조의 구청장의 조치 수단에 "영업정지"를 추가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
청장은 생활폐기물 <u>수집·운반대행업무에</u>	청장은 생활페기물 <u>수집·운반 대행업무</u>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	<u>에</u>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을 거쳐 <u>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u>	결을 거쳐 <u>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또는</u>
역을 축소할 수 있다.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u>대행</u>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u>영업</u>
<u>계약 해지</u>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	<u>정지, 대행계약 해지</u>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하다.

다.

⁵¹⁾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 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략)

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 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가) 조문규정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u>기계식 상차가 가</u>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u>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2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서는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o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는 이러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기 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68조제1항제1호 동 조항은 2019.11.26. 동 법 개정 시 삭제되었음52),

(다) 제안(제12조 개정)

o 제12조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 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혅 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 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 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 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 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 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 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개정 의견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 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 하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 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⁵²⁾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9. 11. 26.>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제13조(포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u>서구(이하"구"라 한다)</u>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u>구매 또는 생산을</u>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u>구매·생산</u>촉진)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u>생산·소비</u>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u>생산·소비</u>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서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제2조제3호에서 "자발적 협약"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범위, 제10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제11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에 녹색제품의 "생산"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3조의 포상 대상자에 생산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 o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53)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고,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⁵³⁾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u>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u>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o 또한 제13조에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으나 포상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개정)

- o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도록 함.
- o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중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제13조에 포상 절차의 근거를 규정함.

쳙

진에 관한 법률 | (이하"법"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 하"구"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상품을 말한다.
-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① 구청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관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다.

-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 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 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 4. 관내 녹색제품 유통 판매 사업자 지 원에 관한 사항
-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 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 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청장 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 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 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다.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 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 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 원에 관한 사항
-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 보 등에 관한 사항
-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 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워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청장 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 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 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환경정책기본법」

다.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o 그런데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인 「환경정 책기본법」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법체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음.
- o 또한,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이 조례의 법체계를 알아보기 쉽게 제1조를 개정하여 근거 법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서구(이</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환경정책기본</u>
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의 기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환경보

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 |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 의 구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 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 민의 책무 등 화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 정함으로써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환경시책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 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 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 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 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구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2) 제2장(환경보전기본시책)

(가) 조문규정

제2장 화경보전기본시책

- 제8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 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 3. 야생 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2021년 1월 5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5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55)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의 환경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규정하였음.
- o 그럼에도 대구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 장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7조의2 신설)

o 제2장에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의 환경계획 수립, 시행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장 환경보전기본시책	제2장 환경보전기본시책
<u><신 설></u>	제7조의2(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⁵⁴⁾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u>구청장은</u>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u>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② 삭제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u>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u> <u>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5) 제5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 보전 계획
 -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 나. 대기 · 수질 · 토양 및 기후 등 생활 · 기후환경
 - 2. 시 · 군 · 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cdot 군 \cdot 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대구 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0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 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 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 활・기후환경 2. 시・군・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제8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8조에서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서구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 등과 관련하여「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 제안(제18조 개정)

- o 제1안: 제18조를 개정하여 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대구광역 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 o 제2안: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제정할 경우 에는 위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명시하는 대신 제18조를 삭제하고 제정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혉	했

개정 의견

<제1안>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안>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u>수당과</u>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 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3조에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 설치를 임의로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옳지 않음.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3조를 개정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
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	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
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	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	회"라 한다)를 <u>둔다.</u>

(2) 제11조(설치) 및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가) 조문규정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u>지하수관리 특별</u>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

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1조는 구청장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 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 어짐.

(다) 제안(제11조 개정)

o 제11조를 개정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
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	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
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한다.

(3) 제20조(가산금) 및 제23조(준용)

(가) 조문규정

- 제2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0조에서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 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 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지하수법」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⁵⁶⁾에 따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가 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제20조 및 제23조 개정)

o 제20조 및 제23조를 개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가산금 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함.

혅 했

- 제2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지 방세징수법 1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 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하다.
-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 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의견

- 제2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지 방세징수법 1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 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 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⁵⁶⁾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u> 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절 도시재생

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가) 조문규정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2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시행령이 2019.11.26. 개정되어 "제3조제5호"가 "제3조제6호"로 변경되었음.
- o 제11조에서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2. 제정(2021.7.13. 시행)되면서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하게 되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11조 개정)

o 제2조 및 제11조를 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현 행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 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의견

-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시설을 말한다.
 -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 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 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4조(주민협의체)

(가) 조문규정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4조제1항에서 서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에서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협의체로서 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대 상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할 사항임.

(다) 제안(제4조 개정)

o 주민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규정인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삭제함.

현 행	개정 의견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u>이하"구청장"이라</u> 한다)은 도시재생	청장(<u>이하 "구청장"이라</u> 한다)은 도시재
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	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서 제>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서 제>

(3)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가) 조문규정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5조에서 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과 그 대행 위원회로서 구 도 시계획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설치조항에서는 위원회의 정식 명 칭을 밝혀주어야 하며 대행위원회의 근거도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함.

(다) 제안(제2조 및 제11조 개정)

o 제5조를 개정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히 밝힘.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u>(이하"법"이라</u>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

- 여 구 도시재생위위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 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u>구 도시계획</u> <u>위원회에서</u>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하여 <u>대구광역시 서구</u>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u>「대구광역시</u>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 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 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 (가) 조문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 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교부 금
-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 3.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 4. 일반회계의 전입금
-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6.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 5.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이 조례는 2006. 11. 20. 제정되고 2018. 8. 10.에 일부개정 된 바 있음. 그러나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 3. 28. 폐지되었음.

(다) 제안(폐지)

- o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임.
- o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설치 목적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 항57)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13절 건설안전

1.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명,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능)
- (가) 조문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⁵⁷⁾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u>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u>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0 제명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음
- o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고, 입법기준으로 볼때 목적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법"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o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제안(제명, 제1조 및 제2조 개정)

- 0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음.
- o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법"에 대한 약칭을 제2조에서 규정함.
- o 제2조를 개정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 정함.

변 행 개정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및안전관리기 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u>자문단은</u>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2)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및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가) 조문규정

제7조(자문 및 <u>안전점검</u>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u>안전점검</u>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u>안전점검</u>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u>안전점검</u>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7조 및 제9조에서 자문단은 안전점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일 뿐 안전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 니므로 제7조, 제9조에서 안전점검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다) 제안(제7조 및 제9조 개정)

o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부분을 삭제도 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7조(<u>자문 및 안전점검</u> 방법) ① 구청	제7조(<u>자문</u>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u>자문 및 안전점</u>	대하여 <u>자문을</u>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 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는 구두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제9조(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 장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하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 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기금의 조성)

(가) 조문규정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2. 기금의 운용수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이 조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1항⁵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기금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 o 또한 이 조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약칭을 정의하지 않고 제2조제1 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약칭을 의도하는 "법"을 사용하였음.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2조를 개정하여 조의 제목을 "기금의 설치 및 조성"으로 하고, 제1항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 기금 조성의 근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약칭을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재 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각종 재 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3.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⁵⁸⁾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근거법령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7. (생략)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 ③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에서 이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59)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60)도 근거법령임.

⁵⁹⁾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 · 도대책본부 또는 시 · 군 · 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⁶⁰⁾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u>지역대책본부장은</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u>지역대책본부</u>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약칭 규정이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조제1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제2조 및 제4조 개정)

- o 제1조를 개정하여 이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명시함.
- o 제4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약칭을 제2조제1호에 규정함.

혉 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세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 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7. (생략)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 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 ③ (생 략)

개정 의견

관리 기본법 세1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 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 을 말한다.

2.~7. (생략)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 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 당관을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2)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가) 조문규정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8.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⁶¹⁾에서는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⁶²⁾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설치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함.

(다) 제안(제3조 개정)

o 제3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둠.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구광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
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	능) ① 법 제16조에1항에 따라 대구광
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을 수행한다.	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
<u>1. ~ 8. (생 략)</u>	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u>수행한다.</u>
	1. ~ 8. (현행과 같음)

(3) 제6조(직무대행)

(가) 조문규정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 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⁶¹⁾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⁶²⁾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6조에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제4조제2항을 잘 못 인용한 오류임.

(다) 제안(제6조 개정)

o 제6조를 개정하여 인용조항을 바로 잡음.

현 행	개정 의견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	<u>제4조제2항</u>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
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한다.

(4)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가) 조문규정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 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총괄조정관
 - 2. 통제관
 - 3. 관할 소방서장(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참석 가능)
 -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장
 -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4조제1항에서 대책본부회의 의장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영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함.

(다) 제안(제14조 개정)

o 제13조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u>영</u>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u>본부장</u>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
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	전대책본부회의(다음부터 "대책본부회
<u>장이 된다.</u>	의"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u>.</u>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u>②</u> ~ <u>⑤</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와 같음)

(5) 제24조(적용범위) 및 제25조(지원 결정)

(가) 조문규정

필요한 경우

제24조(적용범위)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5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및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 · 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24조에서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독립조항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면 조례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개정 의견

(다) 제안(제24조 삭제 및 제25조 개정)

행

혉

o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반영하도록 함.

제24조(적용범위) 사회재난 중 법 제60	<u><삭 제></u>
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	
<u>다</u> .	
제25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	제25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	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
영된 <u>사회재난</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영된 <u>사회재난(법 제60조제2항에 따라</u>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
제2항 및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	역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중 다음 각
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재	법 제16조제2항 및 대책본부 회의의
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
	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 거로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법은 2016. 1. 25.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o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화산재</u>

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대책법」제21조제2항63)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5.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시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⁶⁴⁾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o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가 없음.

나. 개선방안

-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함(입법례 :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등)65)
- 다. 제안[「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칭) 제정]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⁶³⁾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⁶⁴⁾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u>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u>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⁶⁵⁾ 참조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 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000국장과 000국장으로 한다.
 -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 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 원장이 소집한다.
 -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 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669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제정.

제14절 교통

1.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가) 조문규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u>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u>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u>교통안전시행계획</u>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6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교통안 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o 그런데 기본계획을 심의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해야하는 시행계획의 정식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2조 개정)

o 제6조를 개정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정식 명칭을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u>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u>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구청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u>제1항의</u>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u>구</u> <u>청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을</u>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u>구청장은</u>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u>대</u> <u>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안</u> <u>전시행계획을</u>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2)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가) 조문규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8조에서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8조 개정)

o 제8조를 개정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रॅ	현	행			개정 의견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3	교통안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신 설>

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3) 제10조(재정지원 등)

(가) 조문규정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 1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경기를 지원하는 대 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10조 개정)

o 제10조를 개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
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터 제9조에 따른 <u>교통안전 사업을 수행</u>
<u>경우에는</u>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u>하는 민간단체·법인 등에게</u> 예산의 범위
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	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
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입법기준으로 볼 때 목적 조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 않는 것이 적절한데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약 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
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u>의위원회는</u> 다음 각 호의 사	제2조(기능)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u>
항을 심의·의결한다.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
	<u>원회"라 한다)는</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 략)	1. ~ 2. (생 략)

(2) 제3조(구성)

(가) 조문규정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구 예산담당 부서장
 - 2. 구 도시계획담당 부서장
 - 3. 구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 4. 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 5.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6.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3조제2항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구 도시안전국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 그런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서구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3조 개정)

o 제3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u>부위원장은</u>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u>부위원장은</u>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
<u>안전국장이 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거나 위촉한다.
다.	
1. ~ 9. (생 략)	1. ~ 9. (생 략)

3.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조(협력체계)

(가) 조문규정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설치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o 제4조에서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3조 및 제4조 개정)

- o 제3조를 개정하여 설치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함.
- o 제4조를 개정하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u>한다.)은</u> 보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u>한다)은</u> 보
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안전시설</u> 설치계획	있도록 하기 위하여 <u>매년(또는 00년마</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다) 안전시설</u>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u>계획수립</u>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u>제1항에 따른 설</u> <u>치계획 수립</u>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 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도로교통법」제1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및 제9조(협력체계 구축)

(가) 조문규정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 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8조에서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공사시행자에 게 안전관레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것 등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67) 단서 규정에 위반될 우 려가 있음.
- o 제9조에서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3조 및 제4조 개정)

- o 제8조를 개정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하 도록 함.
- o 제9조를 개정하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현 행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 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개정 의견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u>공사시행자에게 요청할 수</u>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 에 명확하게 기록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⁶⁷⁾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이 조항은 2022.1.13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해당함.

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설치 및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4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42조</u>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u>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 용료
- 2. 적립금
- 3. 보조금
-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u>대구광역시 서구</u> 주차시설확충기 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토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교통과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 142조가 제159조로 변경되었음.
- o 제6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 치및운용기금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 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오류인 것으로 보임.

(다) 제안(제1조 및 제6조 개정)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하고 제6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 회"로 하며 기타 체계자구를 정리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조의 규정에 의하여</u> 주차시설 확충에	제159조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 <u>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u>	주차 <u>시설확충기금의 설치</u> 및 운용에 필
<u>라 한다)설치</u>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u>주</u>
제2조(기금의 조성) <u>기금은 각호의</u> 재원	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으로 조성한다.	<u>은</u> <u>다음 각 호의</u>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

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 2. 적립금
- 3. 보조금
-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 구주차시설확충기 금설치및운용기금위 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토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 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 장,교통과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한다.
 -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 2. 적립금
- 3. 보조금
-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
-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 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토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 시안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실장, 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 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그 직 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절 보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면서 제1조의 인용조문 제9조 가 제13조로 변경되었고, 시행규칙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및 제8조 신설)

o 제1조를 개정하여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도록 하고 누락된 시행규칙 조항을 보완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9</u>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u>제13</u>

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 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절 기타

1. 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시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o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⁶⁸⁾중이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성구를 비롯하여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음
- o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및 도시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선방안

- o 「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검토함
- 다. 제안[「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가칭) 제정]

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

^{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모법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3.28.에 제정되었고, 2017.9.22.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목표
 - 3. 단계별 사업ㆍ서비스 추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추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비전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

- 다)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 2. 주민·공무워·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주민이 발굴한 문제의 심사와 선정을 위한 비용
- 2. 문제 해결 조직 구성 및 문제 해결 활동에 필요한 비용
- 3. 성과 환류를 위한 비용
-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11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스마트도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1. 스마트도시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소속 000와 000로 하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 2.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술 등
- 의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보유한 전문가
-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4. 관련분야 관내 주민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목록별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절구분	절 번호	조 례 명	쟁 점 사 항	개 선 방 안
제1절 의회	1	대구광역시 서구 결 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20일) 부 족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위원위촉기간 연장 (30일)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 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 원정수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 동강령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인용 법률명 오기(「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인용 법률명 정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개정 원문 오기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오기 부분 삭제
	7	대구광역시 서구의 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1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제2절 기획 예산	1	대구광역시 서구 사 무위임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2	대구광역시 서구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 수당 외에 제척·해촉 등 공 통된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 필요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안 제시
	3	대구광역시 서구 구 정조정위원회 조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미비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4	대구광역시 서구 발 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위원회 활동기간 도과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활동기간 연장 또 는 조례 폐지
	5	대구광역시 서구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조례의 근거 법규명 잘 못 인용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잘 못 인용한 법규 명 삭제
	6	대구광역시 서구 의 회의원 상해 등 보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법률 개정사항 미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2018.3.20.)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사항들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 로 옮겨져 규정)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규정
	7	대구광역시 서구 지 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8	대구광역시 서구 행 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9	대구광역시 서구 주 민참여예산제 운영조 례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 존재(주민 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의 심의사 항이 「지방재정법」 제39조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 르게 규정)	주민참여예산제운 영위원회의 심의사 항을 「지방재정 법」 제39조제2항 에 맞추어 규정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 방보조금관리 조례	법률 제·개정사항 미반영(「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2021.7.13.)으로 이 조례 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법」제32조의2~제32조의10 규정 이 삭제됨)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하여 개정 (「지방재정법」에 서 인용한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 항으로 수정함)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 방재정공시심의위원 회 운영 조례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 존재(「지 방재정법」이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설치 규정이 없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설치 규정 을 신설하고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가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12	대구광역시 서구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 미적시 -기금설치 근거조항 불비 -'통합기금'으로 약칭하기로 하였으 나 통합기금 또는 기금으로 혼용	근거법령 적시 기금설치 근거조항 신설 통합기금으로 통일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 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 지급 근거조례(「대구광역 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누락 -위원회에 대한 징계결과 통보 조항 불비	근거 조례 반영 개 정 징계결과 통보조항 신설
14	대구광역시 서구 부 조리 신고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정의하 고 있음 -부조리 신고인 관련 비밀유지의 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해당 부분 삭제하 는 등 정리 위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신설
15	대구광역시 서구 주 민의 감사청구에 관 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16	대구광역시 서구 고 문변호사 운영 조례	고문변호사 인원의 제한이 없음	고문변호사 인원의 상한을 정함
17	대구광역시 서구 규 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당 지급 근거조례(「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 누락	근거 조례 반영 개 정

	18	대구광역시 서구 자 치법규 등 입법에 관 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법률 제·개정사항 미반영(「지방 자치법」일부 조항이 새로 제정 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률」로 이동)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하여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해 당 조항을 적시)
	19	대구광역시 서구 적 극행정 운영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지방공무원법」이 2021.6.8.개정(2021.12.9.시행)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또한 2021.7.2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의정비가 필요) -대행 위원회 근거법규 제시 오류(「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용 조항 정비 -대행 위원회 근거법규 정정(「지방공무원법」제7조제
제3절 총무	1	대구광역시 서구 구 기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와 의 통합 필요성	2개 조례 통합
	2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 존재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삭제
	3	대구광역시 서구 동 의명칭과 구역에 관 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4	대구광역시 서구 제 안제도 운영 조례	-대행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 불 필요 -상위 법률 위반(「발명진흥법」 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지 방자치단체에 승계된다고 한 것 을 구청장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	해당 규정 삭제 구청장이 아닌 구 에 승계되는 것으 로 수정
	5	대구광역시 서구 주 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심의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수 강료 징수권 부여	시행예정사항 반영 하여 개정 수강료 징수는 동 장이 하도록 수정
	6	대구광역시 서구 주 민투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7	대구광역시 서구 통 ・반 설치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8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9	대구광역시 서구 공 무원직장협의회의 설 립.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 법률 오적용(협의회 설립시 기를 설립증 교부일로 잘 못 규 정)	해당 규정 삭제
	10	대구광역시 서구 물 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무상대부 규정 미비	해당 규정 신설
	11	대구광역시 서구 회 계관계공무원 재정보 증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2016.11.30. 「지방회계법」제정으로 이 조례 의 제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가 「지방회계법」 제49조, 제50조로 각각 변경	법률개정사항 반영 하여 개정
제4절 문화 홍보	1	대구광역시 서구 상 징물 조례	구기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 필요 성	2개 조례 통합
	2	대구광역시 서구 문 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 존재(지역 문화원의 사업내용이 「지방문화 원진흥법」에 규정되었음에도 조 례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	상위법령과 일치되 도록 개정
	3	대구광역시 서구 인 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조례에서 인용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2.12.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	법률개정사항 반영 개정
	4	대구광역시 서구 지 역정보화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조례에서 인용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12.10.에 「지능정보화 기본 법」으로 개정) -용어 정의 개정 법률에 맞출 필요	법률개정사항 반영 개정 개정 법률에 맞추 어 용어 정의 개정
제5절 평생 교육	1	대구광역시 서구 교 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인용 오류(「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제11조제8항으로 정정
제6절 세무	1	대구광역시 서구 지 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2020.12.29.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포상 금 지급권자에 구청장 외에 지방 세조합장도 포함되었으나 조례에 누락)	상위법령과 일치되 도록 개정
	2	대구광역시 서구 구 세 감면 조례	인용 법의 약칭설명 누락	누락된 약칭을 규 정

제7절 복지 정책	1	대구광역시 서구 가 족친화 사회환경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 없는 용어를 해설	상위법의 용어 해설 준용함으로써 해당 용어해설 삭 제
	2	대구광역시 서구 경 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 례	인용 법률 제명 약칭을 반복하여 규정	두 번 째 약칭 삭 제
	3	대구광역시 서구 다 문화가족 지원에 관 한 조례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 정의를 반복 규정	상위법 용어규정 준용토록 함
	4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3.3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유사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통폐합 필요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로 통합
제8절 사회 복지	1	대구광역시 서구 고 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실비 지급 근거조례 (「대구광역 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누락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 거조례로 규정
	2	대구광역시 서구 대 한노인회 지회 지원 에 관한 조례	조 번호 및 조명 누락	누락 부분 추가
	3	대구광역시 서구 홀 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 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와 통폐합 필요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로 통합
	4	대구광역시 서구 장 애인자립생활지원 조 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혼용하여 혼란을 일으킴	입법취지 검토 후 개정 필요
	5	대구광역시서구장애 인재활교육센터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조 번호 및 조명 누락	누락 부분 추가
제9절 위생	1	대구광역시 서구 식 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령 위임 없이 조례 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 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에서 법 규정과 다르게 규정)	조례의 해당부분 삭제

2	대구광역시 서구 음 식판매자동차 영업장 소 등에 관한 조례		오류 인용 조항 정비
1	대구광역시 서구 담 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인용 오류(조례의 근 거 법령으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제3항을 인용하였으 나 제4항을 잘 못 인용) -사실조사를 외부단체에 의뢰하 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인데, 단체와 협약체결하는 것으로 잘 못 규정	오류 인용 조항 정비 해당 규정 삭제,
2	대구광역시 서구 물 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이 위원에 포함여부 불분 명	위원장이 위원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3	대구광역시 서구 착 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 제·개정사항 미반영(「소상 공인기본법」이 제정(2020.2.4.) 시행(2021.2.5.)되면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규정 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전)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 개정(「소상 공인기본법」을 인 용하도록 정리)
4	대구광역시 서구 유 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 정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기 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를 조례에 규정)	해당 규정 삭제
5	대구광역시 서구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조례	점가"의 용어정의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다르게 규 정)	
6	대구광역시 서구 소 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 (2020.2.4.) 시행(2021.2.5.)됨에 따 라 법에서 위임(강행규정)한 소상 공인시책 수립, 시행위해 조례 필 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 2 3	2 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보존 구역 기업상생발전 역 기업상생발전 역 기업상생발전 역 기업상생발전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관 등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관한 시장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원에 관한	2 심판매자동차 영업장 소 등에 관한 조례 전

제11절 환경 청소	1	대구광역시 서구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상위법령 위배(「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서는 대 행계약 해지만 규정)	조치사항에 영업정 지도 포함하도록 개정
	2	대구광역시 서구 음 식물류 폐기물의 발 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2019.11.26. 「폐기물관리법」개정시 기준 부 적합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과 태료 부과 근거규정 삭제)	
	3	대구광역시 서구 녹 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위임 범위 넘은 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 진에 관하여만 위임하고, "생산" 촉진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음)	"생산" 촉진 부분 삭제
	4	대구광역시서구환경 기본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2021.1.5.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구의 환경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 였으나 조례 미비)	해당 규정 신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 하수관리 조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임의로 설치 토록 하면서,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에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순) -상위법령 인용 오류(「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장였으나 조례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잘 못 규정)	계 설치를 강행규 정으로 개정
제12절 도시 재생	1	대구광역시 서구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조번호 미반영}-법률개정사항 미반영(이 조례에적용되는 「지방재정법」일부 규정이 2021.1.12.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전)-구청장이 설치하는 협의체에 예산 지원토록 규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조번호 반영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하는 것 으로 개정

	2	대구광역시 서구 기 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3.28. 폐지됨	해당 조례 폐지
제13절 건설 안전	1	대구광역시 서구 안 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자문단에게 안전점검,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문단의 권한을 자문에 한정하도록 정비
	2	대구광역시 서구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 설치근거조항 미비	기금 설치 근거규 정 신설
	3	대구광역시 서구 재 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대 책본부회의 설치 근거조항 미비 인용 조항 오류	본부 설치 근거규 정 신설 인용 조항 오류 정 정
	4	대구광역시 서구 지 진피해 시설물 위험 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개정사항 미반영(근거법령으로 인용하고 있는「지진재해대책법」이 2016.1.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법률개정사항 반영 개정
	5	대구광역시 서구 안 전관리민관협력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의 구성 근거조항이 있으 나 조례 미비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제정을 검토함
제14절 교통	1	대구광역시 서구 교 통안전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 례」누락	설치 근거조례인 명시
	2	대구광역시 서구 교 통안전정책심의위원 회 운영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으로 규정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도 록 개정
	3	대구광역시 서구 보 행자 안전을 위한 횡 단보도 안전시설 설 치 조례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행 주 기 미비	수립, 시행 주기 추 가 규정
	4	대구광역시 서구 어 린이 보호구역 및 통 학로 교통안전 조례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주체 미규정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5	대구광역시 서구 주 차시설 확충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위원회명칭 오류(주차시설확충기 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위원회명칭 바로잡 음(주차시설확충기 금운용심의위원회)

제15절 보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취 약계층 방문방역 지 원에 관한 조례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미반영	시행예정 사항 반 영하여 개정
제16절 기타	1	대구광역시 서구 스 마트도시 조성 및 운 영 조례안(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	조례안 제시

■ 참고 문헌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7.

국회 법제실, 알기쉬운 법률용어, 2020. 12.

국회 법제실, 유형별 입법모델, 2019,12.

국회사무처, 국가재정과 조세의 이해 과정, 2021.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1. 3.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1. 3.

국회사무처, 국회의사편람, 2016. 6.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I, 2016. 6.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Ⅱ, 2016. 6.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정감사·조사편람, 2016. 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2.

법제처, 2019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019. 12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2017. 12.

법제처, 2020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집, 2020. 12.

법제처, 2019년 법제업무편람, 2018. 12.

법제처, 법령 입안 길라잡이, 2019. 7.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2019. 12.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핵심 요약서, 2019. 12.

법제처,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2021. 6.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6.

법제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12.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4.

선정원 외 4인, 자치입법론, 경인문화사, 2020. 10.

최민수, 자치단체 민간위탁/보조금/공유재산 가이드 북, 2021. 6.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2018. 7.

최민수·윤진훈·박찬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 10.

홍준형, 지방자치법, 대명출판사, 2021. 3.

■ 인터넷 자료 등

강원도청, http://www.provin.gangwon.kr

경기도청, http://www.gg.go.kr

경상남도청, http://www.gveongnam.go.kr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https://www.dgsocouncil.go.kr

대구광역시 서구청, https://www.dgs.go.kr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전라남도청, http://www.jeonnam.go.kr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종로구의회, https://council.jongno.go.kr/council/main.do

종로구청, https://www.jongno.go.kr/portalMain.do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충청북도청 www.chungbuk.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